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53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박상혁・한민수・허 영
이해식・문진석・김주영
이연희・김영환・김한규
강경숙・최혁진・박용갑
박수현・김기표・김우영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7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단속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형벌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관련자의 자발적 신고 및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8조의2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8조의2제1항 중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제176조, 제178조 또는 제178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가 수사기관에 자수(증권선물위원회에 자진신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수사·재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로 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448조의2(형벌 등의 감면) ① ----------제176조, 제178조 또는 제178조의2----------.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